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2일 남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2023년 5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될 안건임.

1. 제안이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로 읍·면장으로 규정(안 제5조)

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안 제6조~제7조)

다. 안내문 게시 등(안 제8조)

라.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안 제9조~제10조)

마.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 및 관리주체를 정하고

안내문 게시, 관리대장 작성, 안전 점검 및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야외운동기구를 관장하는 상위법령이 모호한 실정¹⁾이고,

우리 군의 야외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법규성이 없는 ‘지침’의 형식으로 규정²⁾되어 있으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례’를 통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입법례: 전국 141개 지자체, 도 내 9개 시·군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및 별표1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형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의미하는 야외운동기구는 체육시설과 구분되는 시설로 판단됨.

2) 「평창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 2015. 2. 13. 예규 제193호